

공사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입찰대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8. 12.

충주시 수안보면 재무관

- 본 공사는 수안보면 삼천리타운 대표 이점양이 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수안보면 삼천리타운 대표 이점양과 직접 계약 체결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공사의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충주시 수안보면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주력 분야를 요구하며 해당 주력 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안보 삼천리타운 외부페인트 및 현관문 교체		
공사위치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2길 6, 삼천리타운(1, 3, 6, 7동)		
공사내용	외부페인트 2,700m ² 화단보수, 현관문교체 9개소	공사구분 /공사유형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추정금액	39,278,000원	기초금액	39,278,000원
추정가격	35,707,273원	부가가치세	3,570,727원
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입찰, 현장설명생략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3. (목) 11:00 ~ 2026. 8. 19. (수)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 (수) 13:00 이후 충주시 수안보면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충주시 수안보면 총무팀 (043-850-2324)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충주시 수안보면 개발팀 (043-850-8235)

☐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세**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5호에 따라 사전에 전자입찰자의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6. 낙찰자결정

-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개찰장소: 수안보면 입찰집행관 PC

7. 건강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릅니다.
-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72,744	-	-	-	-	772,744	-	-

8.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
 - ☐ 총주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 사용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됨.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별첨)도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 안내

- ☐ 계약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 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2.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은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1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및 유의사항

-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12.2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2.12.23.)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도 급 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합니다. <table><tr><td>청 구 일</td><td>지급기일</td><td>은행명</td><td>계좌번호</td><td>비고</td></tr><tr><td>매 월 일</td><td>매 월 일</td><td></td><td>통장사본 참조</td><td>수급인</td></tr><tr><td colspan="4"></td><td>하수급인</td></tr></table>					청 구 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 월 일	매 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청 구 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 월 일	매 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table><tr><td>년</td><td>월</td><td>일</td><td colspan="2"></td></tr><tr><td colspan="3">발주기관</td><td>:</td><td>(인)</td></tr><tr><td colspan="3">계약상대자</td><td>:</td><td>○○○(주) 대표 (인)</td></tr><tr><td colspan="3">하수급인</td><td>:</td><td>○○○(주) 대표 (인)</td></tr></table>					년	월	일			발주기관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년	월	일																						
발주기관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별첨2】

청 럽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000000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 다 음 -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직인)

수급자(시공사) : 대표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00000 귀하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사 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으며, 충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00000 귀하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행안부예규 제231호, 2023.01.01. 시행)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알’은 ‘안내공고알’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000000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충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진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련법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 보건 관련법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충주시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000000 귀하

입찰유의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회사 대표 (인)